

.



1991. 4. 15

249

1998. 9. 30

374

1 ()

,

(" . ")

가

32

4

30

4

.

2 ()

.

1.

2,

.

3.

4.

.

1.

2,

3 ()

1 31

(" ")

("

")

4 ()

3

.

5 ()

4

,

1.

2.

가

3.

6 ()

7 ()

6

5

1.

5

2. 5

8 ()

1

가

1

9 ()

10 ()

· ·

,

·

·

()

,

·

11 ()

· · ,

가

·

·

,

·

1.

2.

3. (· ·)

12 ()

·

·

·

13 ()

.

.

14 ()

.

.

1.

,

2.

,

,

3. 가

,

,

15 (. 가)

.

11 3

. 가

,

12 31

.

1

가

3

.

.

16 ()

17 ()

('91 . 4 . 15)

() 1991
3 1991 4 30 .

('98 . 9 . 30)

()

중앙행정기관과 시·도공무원상호파견제운영지침 개정내용

□ 목 적 (제1조)

(현 행)

중앙행정기관과 직할시·도간의
협조체제 유지



(개 정)

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 및
도간의 협조체제 유지

□ 파견계획의 수립·통보(제3조)

(현 행)

총무처장관은 기본계획을
중앙행정기관의 장 및
직할시장·도지사에게 통보



(개 정)

행정자치부장관은
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통보

□ 파견요청(제4조)

(현 행)

- ① 각 시·도지사는 파견요청
계획서를 내무부장관에게 통보
② 내무부장관은 총무처장관
에게 시·도 파견 요청
계획서를 제출



(개 정)

- ① 행정자치부장관에게
통보
② 삭 제

□ 협의(제5조), 근무명령(제6조), 성과분석(제15조), 시행세칙(제17조)

(현 행)

총무처장관 및 (또는) 내무부장관



(개 정)

행정자치부장관